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정·주의 요구

제 목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 사용 부적정

기 관 명 광주광역시 서구

내 용

「건축법」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상업지역 건축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하고 마감 재료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상기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 재료로 사용하여야 하고, 외벽 마감 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마감재료 중 단열재는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축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에 대해 방화에 지방이 없

는 재료로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와 건축물 외벽에 불연재료 또는 준 불연 재료를 마감 재료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 등에 근거하여 별도의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서구청 소재 ○○동 ○○○○-○번지(건축주 ○○○) 내 신축중인 건축물은 「건축법」 제52조의 적용 대상 건축물로써 관련 규정에 맞는 마감재료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확인결과 아래 [표]와 같이 준불연재의 마감 재료를 사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부적정 사용 단열재 내역

현재 시공중인 외벽 단열재 등급	규격(mm)	두께(mm)	수량	비고
가등급 2종 1호 (불연재가 아닌 단열재)	600 × 1200	100	3,470㎡	외부단열면적 : 2,416㎡

※ 단열재 납품처 : ○○○○○(광주 ○○구 ○동 ○○길 ○○-○○)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

[시정] 준불연재 마감재료 사용대상 건축물임에도 준불연재를 사용하지 않은 해당 건축물에 대해 규정대로 시공하도록 하고 당해 건축물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 등에서 규정한대로 적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건축공사 시행시 「건축법」에서 규정한대로 건축물 마감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하시기 바랍니다.